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예규

주관부서 : 공정거래그룹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임직원들이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포스코건설의 모든 임직원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선임) 감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된다.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4.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8.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9.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

업무는 공정거래업무 전담그룹에서 주관한다.

##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 제11조(설치 및 구성)

- ① 자율준수협의회의 위원은 각 본부의 선임그룹리더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 ③ 주관부서 그룹리더는 간사를 맡는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 제3절 임직원

### 제13조(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각 그룹리더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각 그룹리더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14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예규와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경영, 재무, 인사, 조달, 영업 등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예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③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인사노무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 보관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19조(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경쟁당국과의 관계)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자율준수관리자는 이 예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 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 2. 26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정 2003.07.10	개정 2005.05.02	개정 2007.03.05	개정 2013.03.25
개정 2014.04.02	개정 2018.02.26		